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개정 2009. 12. 01

개정 2011. 10. 01

개정 2016. 11. 01

개정 2016. 12. 15

I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롯데건설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II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실천사항

1. 기본원칙

이 실천사항은 롯데건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·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롯데건설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실천사항

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(위원장)을 포함하여 외주 구매본부 내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견적팀장, 기술 부서 팀장, 현장소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.

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

- (1)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- (2) 내부 심의위원회는 롯데건설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1%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또는 사후 심의하여야 한다. 또한 필요 시 거래계약(예상)금액에 상관없이 각 공종별 주요계약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할 수 있다.

〈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예시〉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-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-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-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
- (3) 내부 심의위원회는 롯데건설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금액이 1%이상인 거래의 계약 종료 시, 계약 수행 간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사후 심의하여야 한다.
- (4) 기타 하도급거래 중 개최 사유(저가 심의, 공종별 주요 계약 심의 등) 발생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.
- (5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(6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(7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- (8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(9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
(10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3. 실천사항 내용의 롯데건설 사규 반영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의 실효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본 실천사항 도입 및 준수의 근거를 롯데건설 외주업무 규정 제 55조에 마련하여 둔다.

부 칙 (2009.12.01)

본 가이드라인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1.10.01)

본 가이드라인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11.01)

본 실천사항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12.15)

본 실천사항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